


검사실시결과통보서

| | | | | |
|--|---|------|-----------|---|
| 문서번호 | E안양지사G5-2022-5772 | | 고객안내번호 | 4015-2206-0217-2 |
| 접수번호 | 4015-20220609-00025 | | 관할검사기관 | 안양지사 |
| 건물명 | 과천시민회관 | | | |
| 건물주소 |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(중앙동) | | | |
| 검사종류 | 정기검사 | 검사대수 | 3대 | |
| 검사실시일 | 2022.08.05 | | 검사자 / 임회사 | 윤호석 / 유지관리업체 |
| 판정결과 | 합격 | 보완 | 조건부합격 | 불합격 |
| | 3 | 0 | 0 | 0 |
| 판정결과 | ※ 관련 근거 :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8조, 제32조 - 합격 :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- 보완 : 설치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(설치검사 진행중) - 조건부합격 :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으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- 불합격 : 설치 및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| | | |
| 안내사항 | ① 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(승강기 안전관리자)」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건물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선임하지 않았다면 즉시 안전관리자 선임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법정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※ 안전관리자 선임신청 : 승강기민원24(https://minwon.koelsa.or.kr) ※ 교육신청 : 승강기교육센터(https://edu.koelsa.or.kr) ②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(검사주기 6개월)가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가 완료된 후 다음번 검사주기도래 안내문이 발송됨에 따라 해당 승강기는 검사주기도래일에 임박하여 안내될 수 있습니다. | | | |
| 위와 같이 고객님의 신청하신 승강기검사에 대한 검사실시결과를 안내드리며, 승강기별 세부사항은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08월 06일 | | | | |
| 첨부 1. 검사실시결과내역서 2. 검사성적서 3. 시정권고내역서 | | | | |
| <h2>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</h2> | | | |  |
| 안양지사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, 계양빌딩 7층 (안양동) | | | | TEL : 1566-1277 |